

---- 목 차 ----

| 의<br>번<br>호 | 건<br>명               | 페이지 |
|-------------|----------------------|-----|
| 2019-63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 1   |
| 2019-64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의안  
번호

2019-63

제출일자 : 2019. 4.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형평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고시지역 : 2017.11.30. 현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나. 대상면적 : 31.90km<sup>2</sup>

다. 읍면동별 적용대상지역

| 읍면동 | 면 적(m <sup>2</sup> ) | 적 용 대 상 지 역                                             |
|-----|----------------------|---------------------------------------------------------|
| 합 계 | 31,906,464           | 거창읍·웅양면·마리면·남상면·가조면 일부지역                                |
| 거창읍 | 26,767,975           | 상림리·중앙리·대동리·대평리·김천리·송정리·장팔리·정장리·동변리·서변리·가지리·양평리·학리 일부지역 |
| 웅양면 | 2,773,000            | 죽림리·동호리·산포리·노현리 일부지역                                    |
| 마리면 | 455,000              | 영승리 일부지역                                                |
| 남상면 | 1,016,754            | 대산리·월평리 일부지역                                            |
| 가조면 | 893,735              | 대초리·일부리·마상리·수월리 일부지역                                    |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2조, 거창군 군세 조례 제13조

나. 예산조치 : 없음

##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거창군 군세 조례】**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9-64

제출일자 : 2019. 4.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을 네트워킹 하여 상호 공동체적 지원관계를 형성,
- 마을만들기지원 센터를 설치 효율적인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자금의 외부유출을 줄이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조직을 육성,
- 거창군 지역개발 사업의 전문성, 현장성, 지속성 강화로 지역사회의 역량과 요구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 사 무 명                       | 사 무 내 용                                                                                                                                                                                                                                                                                             |         |     |              |
|-----------------------------|-----------------------------------------------------------------------------------------------------------------------------------------------------------------------------------------------------------------------------------------------------------------------------------------------------|---------|-----|--------------|
| 거창군<br>마을만들기<br>지원센터<br>운 영 |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br>-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내생적 역량강화<br>- 지속적인 관계 형성으로 역량강화 효과 제고<br>- 행정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민관협치(협치,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br>- 흩어진 자원을 연결하는 것, 주민과 이들 조직과 허브역할<br>- 거창 마을만들기를 위해 리더교육, 주민교육, 현장포럼, 선진지 견학, 마을대학 등<br>- 효율적인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자금의 외부유출을 줄이기 위해 자생력 강화<br>- 시군역량강화 사업비(잠정) (단위 : 백만원) |         |     |              |
|                             | 계                                                                                                                                                                                                                                                                                                   | 시군역량강화  |     | 기초생활<br>거점육성 |
|                             |                                                                                                                                                                                                                                                                                                     | 기본      | +α  | 마을단위<br>역량강화 |
|                             | 850~900                                                                                                                                                                                                                                                                                             | 250~300 | 200 | 100          |
|                             |                                                                                                                                                                                                                                                                                                     |         |     | 300          |

## 나. 조직(안)



## 다. 운영 정상화 지원

(단위 : 백만원)

| 계  | 인 건 비 |         |       | 운영비<br>(활동비 포함) |
|----|-------|---------|-------|-----------------|
|    | 소계    | 사무국장(1) | 팀장(2) |                 |
| 80 | 40    | 15      | 25    | 40              |

※ 운영인력 : 초기 3명 ⇒ 업무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충원

## 라.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7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0조

## 관 련 법 령(요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협약체결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 제정 ) 1999.07.15 조례 제1515호

( 일부개정 ) 2013.06.12 조례 제2138호

( 일부개정 ) 2014.05.28 조례 제2192호

###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 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0조

- 제20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